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신설 2025. 6. 9.>

보험등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기간(제39조의2제1항 관련)

구분	통지 기간
1.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계약 체결 사실을 보험회사등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2일 이내. 이 경우 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등 계약의 해지 사실	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등이 관리·운영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2일 이내. 이 경우 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등 계약의 미체결 사실 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보험등 계약이 끝난 경우 나.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보험등 계약이 끝난 경우 다.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보험등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20일까지 같은 달 말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